

基調講演

中國의 仲裁制度

江 平 *

中國北京仲裁委員會 委員長

〈목 차〉

- I. 中國 仲裁制度의 進程
- II. 國內 仲裁
- III. 涉外 仲裁

* CIETAC 고문

중국 법학회 비교법 학회 회장

중국-미국 법률(상법)학회 회장

I. 中國 仲裁制度的 進程

(1) 1954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¹⁾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對外貿易仲裁委員會)(*1988년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CIETAC)로 개명함, 이하 “CIETAC”이라 함)를 設立하고, 1958년에는 중국해사중재위원회(中國海事仲裁委員會)를 設立한다.

이 두 仲裁 機構는 民間 機構로 專門적으로 涉外 案件을 受理하며, 仲裁規則는 기본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따르며, 主要 受理 案件은 中外合資企業, 合作企業의 紛爭과 貿易 紛爭이다.

(2) 1981년에는 경제 계약법²⁾ (經濟 合同法³⁾)이 通過되면서 “雙方이 모두 국가가 규정한 合同 管理 機關에 조정(調解)과 仲裁을 申請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또한 “當事者中에서 仲裁에 不服할 경우, 人民法院에 起訴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이 中國 行政仲裁制度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의 10여 년의 시간동안 연속해서 技術 계약(合同), 부동산(房地產) 관리 등 여러 領域에서 仲裁 制度가 實行되었는데, 그 特徵을 보면:

- 1) 중국국제상회(中國國際商會)라고도 함.
- 2) 1999년 3월 15일 중국의 신계약법(合同法)이 통과되어, 199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됨. 신계약법은 기존의 경제합동법(經濟合同法), 섭외경제합동법(涉外經濟合同法), 기술합동법(技術合同法)외에 법학 이론과 국외 입법 경험을 참고해, 더욱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을 갖추게 된다: <中華人民共和國 合同법 精解>, 中國政法大學 出版社: 1999년 3월, 江平 教授 (主編)
- 3) 중국의 법률 용어를 가능한 사용하기 위해 괄호 안에 중국식 법률 용어를 그대로 표기함.

- a. 仲裁 機構는 行政 部門 아래에 設立되었고
- b. 仲裁 委員은 비록 專門家라고 하지만, 주로 行政部門의 관련자였으며
- c. 專門性은 갖추었지만, 綜合的 능력은 부족했고
- d. 仲裁 決定에 不服할 경우 여전히 人民法院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었다.

(3) 1994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中華人民共和國 仲裁法, 이하 “중재법”이라 함)이 通過되는데, 앞에서 논한 民間적 성격과 行政적 성격이 하나로 통합되어, 行政仲裁制度가 취소되는 同時에 비교적 큰 都市에 仲裁委員會가 設立된다.

현재까지 全國에 약 160여개의 仲裁委員會가 있다. 仲裁法에서는 “중재 위원회는 行政機關에서 獨立되며, 또한 行政機關과 隸屬 關係에 있지도 않고, 仲裁委員會 사이에서도 隸屬關係는 존재하지 않는다”⁴⁾ 規定하고 있다.

仲裁法에 근거해 새로운 仲裁委員會의 設立이 필요함에 따라, 仲裁法은 “중재 위원회는 市의 人民政府 관련 부서와 商會에서 통일적으로 設立한다”⁵⁾고 규정하게 되고, 그 후의 地方 仲裁委員會는 모두 정부 법제 판공실(政府法制辦公室)에서 설립 준비 작업을 책임지게 해서 어느 정도의 行政的 色彩를 띄게 된 것이다.

4)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8조, 제14조

5)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0조 2항

II. 國內 仲裁

(1) 仲裁法 規定에 의하면, 각 도시마다 설립된 仲裁委員會는 비록 涉外仲裁案件을 受理할 수 있지만, 絕大多數는 여전히 國內 紛爭 案件이다.

國內 仲裁와 涉外 仲裁는 仲裁 절차(程序)와 仲裁 規則에서는 별 차이는 없고, 仲裁 委員 名單 및 仲裁 판정(裁決)의 執行 등에서만 여전히 차이가 있다.

(2) 國內 仲裁 案件은 증가 추세에 있다. 北京 仲裁委員會의 경우를 보면, 仲裁 委員會가 設立된 이후 매년 두 자리 수의 增加를 보이고 있는데, 當事者들이 仲裁로의 選擇을 원하는 이유는 仲裁가 客觀性과 公正性, 편의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民事訴訟法 第25條를 보면 “계약(合同)의 雙方이 書面 계약(合同) 중에 합의(協議)를 통해 被告 住所地, 계약(合同) 履行地, 계약(合同) 締結地, 原告 住所地, 目的物 所在地 의 人民法院으로 管轄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심급 管轄(級別管轄)과 專屬管轄의 規定은 違反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仲裁의 장점은 地域 管轄 制限이 없으며, 또한 심급 管轄(級別管轄)과 專屬管轄의 制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3) 仲裁의 公正은 주로 仲裁 委員의 人格에 달려있다.

中國 仲裁 委員의 選任은 네가지 경로를 통하는데:⁶⁾

6) 참조: 中華人民共和國 仲裁法 第13조

- a. 대학(高等院校)과 研究 機構의 專門家나 學者
- b. 경험이 풍부한 辯護士
- c. 政府의 高級 職責 官員
- d. 退職한 法官과 檢察.

仲裁 委員에 대한 심사(考核)는 仲裁 委員會내에 紀律委員會에서 하고 있다. 중재 판정부(仲裁庭)는 독립적으로 仲裁를 하며, 仲裁委員會는 그 판정(裁決)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⁷⁾

중대하거나 복잡한 案件 혹은 중재 판정부(仲裁庭) 중재인들간 의견 불일치가 있거나 또 다른 意見의 參考를 위해 仲裁委員會에 專門家委員會를 구성, 토론을 할 수 있지만, 專門家委員會의 意見은 중재 판정부(仲裁庭)에 대해 참고나 혹은 자문에 불과하며, 중재 판정부(仲裁庭)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中國 仲裁은 여전히 서로 다른 仲裁 委員의 水準 限界와 단심제(一裁終局)로, 中國 法律은 司法監督制度의 規定을 두고 있다. 즉 當事者 雙方이 法院에 판정(裁決) 취소(撤消)를 申請할 수 있는데, 취소(撤消) 판결의 이유는 절차(程序) 규정을 違反한 것 외에도(* 仲裁 합의(協議)가 없거나, 仲裁 합의(協議) 範圍에 속하지 않는 것 등) 또한 어떤 실질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

- a. 판정(裁決) 근거인 證據를 위조하거나
- b.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裁決)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證據를 은닉하거나

7) 이것은 中國의 法院에 設立된 심판위원회(審判委員會)의 직능과 달라, 審判委員會는 審判 합의부(合議庭)의 意見을 否決 할 수 있다.

C. 仲裁人이 賂物을 받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때이다.⁸⁾

當事者は 판정(裁決) 취소(撤消) 申請을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仲裁 판결(裁決)의 執行 中에서도 피신청인은 판정(裁決)이 확실히 法定 절차(程序)를 위반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證據를 提出 할 수 있으며, 주요 證據 不足 혹은 法律 適用 錯誤 등의 사실이 있을 때, 法院은 부집행을 판결(裁定)할 수 있다.

Ⅲ. 涉外 仲裁

仲裁法은 “섭외 중재의 特別規定” 專門 章(第7章)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規定하고(*中國 國內 仲裁와 다른) 있다:

(1) 전문적으로 涉外 仲裁를 처리하는 곳은 CIETAC (中國國際經濟貿易 仲裁委員會) 이다. 그러나 涉外案件의 受理에 대해 地方仲裁委員會도 결코 排除되어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CIETAC는 北京에 設立되어 있고, 上海와 深川에만 分會(分會)가 있어서, 邊방의 省과 國境(지역) 貿易 紛爭을 모두 3개 都市에 와서 해결한다는 것은 非現實的이기 때문이다.

(2) 涉外 仲裁 機構의 仲裁人은 해외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지금까지 CIETAC과 대도시의 仲裁 委員會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 仲裁 委員으로 임명하고 있고, 臺灣의 仲裁 委員도 이에 포함된다.

8)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58조

그러나 해외 仲裁 委員의 초빙에 따른 旅程 費用 등은 지정한 仲裁 委員會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

(3) 涉外 仲裁의 당사자는 證據 保全을 申請할 수 있고,⁹⁾ 申請人의 所在地 中級人民法院에서 처리를 한다.¹⁰⁾

(4) 涉外 仲裁 판정(決定)의 취소(撤消)와 부집행의 사유는 국내의 仲裁 판결(裁決) 취소(撤消)와 부집행과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조건이 더 엄격하며, 오로지 절차(程序)상의 원인에 限하는데:

- a. 仲裁 조항이나 혹은 합의(協議)가 없는 경우
- b. 피신청인이 仲裁人을 지정 받지 못했거나, 중재 절차(程序)의 진행 通知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피신청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의견 진술을 못했을 경우
- c. 중재 판정부(仲裁廳)의 構成 혹은 仲裁 절차(程序)와 仲裁 規則이 符合하지 않을 경우
- d. 중재 판정(裁決) 사항이 仲裁합의(協議) 範圍 혹은 仲裁 機構의 管轄權에 속하지 않는 경우이다.

法院은 證據 不足 혹은 法律 適用의 錯誤 등의 이유로 涉外 仲裁 판정(裁決)에 대해 취소(撤消) 혹은 부집행을 할 수 없다.

(5) 中國은 1986년에 뉴욕 協約 (“외국인 중재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공약(1958년)에 가입을 함과 동시에 성명을 통해:

- a. 中國은 互惠主義의 基礎 下에 協約에 加入한 加入國에 한해

9) 中華人民共和國 仲裁法 제68조

10) 譯註: 中國인의 證據 保全은 基層人民法院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음 (中華人民共和國 仲裁法 제46조)

本 協約을 適用하며

- b. 中國은 오직 中國 法律이 계약성 혹은 비계약성 商事 法律 關係에 속한다고 認定하는 紛爭의 발생에 대해 本 協約을 適用한다고 밝힌바 있다.

(6) 涉外 仲裁 판정(裁決)의(中國 및 外國 仲裁 機構의 판정(裁決)을 포함해서) 中國 法院의 執行에 중요한 意義를 고려해, 最高人民 法院에서는 “섭외 중재 판정(裁決)의 취소(撤消) 혹은 부집행은 모두 最高人民 法院의 심의(審核)를 받아야 한다”고 특별히 規定하고 있다.

(譯者: 중국정법대학 민상법 박사과정 김진경)

<참고: 법률 용어와 법규 명칭은 중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역을 했다>